#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1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김대식·곽규택·김기현

고동진 • 주진우 • 박성훈

김민전 • 백종헌 • 서지영

조경태 · 정성국 · 박성민

조정훈 의원(13인)

##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 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

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 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함.

바. 구조개선 명령(안 제10조)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아.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 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자.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차.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카.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

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벌칙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 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 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 2.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 3. "경영위기대학"이란 학생 충원율 감소 등의 사유로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제8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 4. "교육사업양도"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5.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다른 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에 대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2장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 제4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에 따른 자율 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 7. 제17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 1.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대학 경영에 10년 이상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 분야의 행정 또는 연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6.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상당하는 고등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과 학교 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 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 2.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 3. 제9조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실적 점검

- 4. 제12조에 따른 경영자문의 제공 및 지원
- 5. 제19조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에 대한 청산 지원
- 6.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제1절 재정진단

- 제7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 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경영위기대학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 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 2.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통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구조개선 조치

- 제9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위험의 원인과 그수준을 고려한 구조개선 조치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 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 2. 학부·학과의 통·폐합
  - 3. 사립대학의 통 폐합
  -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 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④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변경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구조개선 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학생 모집의 정지
- 2. 사립대학의 폐교
-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 4.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율 개선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 인은 제12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12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 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및 사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 다.
  - ③ 임시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

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직전 정식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 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장 폐교 및 해산

- 제16조(폐교·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폐교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구조개선이행계획 중인 대학
  - 2. 구성원(재적학생 포함)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 4.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학교법인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감사 결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경영위기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에 대한 출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 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
- 4. 제16조에 따른 해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교직원 2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의 귀속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범위, 한도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 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 제18조(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① 국가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교명령 받은 대학의 소속학생을 포함한다)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폐교대학은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④ 학교법인은 면직 교직원에 대하여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폐교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참여에 대하여 차별·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교대학의 학적부·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 제19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82조에 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 제20조(해산·청산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 구조개선명령 시
  - 2.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신청 시
  - ② 전담기관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 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폐교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 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대학의 소재 지역을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 2.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 3. 지역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
- 4.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③ 그 밖에 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 제23조(벌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9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등
기일(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이 지정한 해산일을 의미한다)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민법」 제
9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청산법인에 대하

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산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